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4.

발의자 : 박용갑 · 김영환 · 소병훈

이병진 · 박희승 · 황명선

김영호 · 윤준병 · 황정아

서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 · 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.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 · 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

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).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1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가맹점이 여객에게 받은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가맹수수료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9조의1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게 받거나 요구하는 가맹수수료 등의 조정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4. · 5. (생략)	<u>가맹수수료 등의 조정</u> 4. · 5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	--